

#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1998년 7월 14일  
제안자 : 이현영 의원 외 2

## 1. 제안이유

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으로서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청원의 이의신청 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조항 삭제 (안 제5조)

나.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 삭제 (안 제6조)

## 3. 개정근거 :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( 개정된 조례 )

##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”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조 문 대 비 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안
<p>제5조 (이의신청) ① ( 생 략 )</p> <p>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<u>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 (이의신청) ① ( 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( 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6조 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<u>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회부한다.</u></p>	<p>제6조 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여야 한다.</p>